

의원입법 사후 검토 정보(2025년 4분기)

□ 개요

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사후검토 등 법제 지원

□ 분기별 현황

(2025. 10. 1. ~ 2025. 12. 31.)

번호	의원입법 법률안 사후 검토 건수
1	10건

※ 법제업무 운영규정

제11조의3(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) ① ~ ④ (생략)

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.